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35
----------	------

2020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상훈 의원 외 15명
- 나. 제안일 : 2020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20년 10월 26일
- 라. 상정일 :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훈 의원)

### 가.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 공공성 확보와 교육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를 독립 운영토록 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10.29. ~ 10.5.)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 공공성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를 독립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수, 구성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본 자문위원회')의 ① 독립 운영,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위원 수, 구성, 임기, 회의개최, 의결정방법, 수당 등), ③ 지원금의 정산주기 조정 등으로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본 자문위원회가 속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10명)와 청소년친화도시분과(10) 등 2개의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본 자문위원회는 본 조례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청소년육성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통합 운영해 오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책 심의와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 <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도 >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요 >

#### □ 위원회 개요

○ 구성인원 : 총 20명 이내

#### - 당연직(6명)

- ▶내부(3) : 행정1부시장, 평생교육국장, 복지정책실장
- ▶외부(3)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

#### - 위촉직(14명)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임 기 : 2년 (2020.11월 ~ 2021.10월)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나. 세부 내용 검토

- 안 제8조제1항은 본 자문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분과위원회(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와 분리하여 독립운영하려는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여건과 상황을 시책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안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지원방안의 적절한 수준과 규모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u>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u>”와 <u>통합운영</u> 할 수 있다.</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u>둔다.</u></p>

- 본 자문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정하여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독립 운영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조직구성권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의원발의 개정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구축된 조직에 대해 사후적·소극적으로 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권한침해와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생략)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략)

(출처 : 대법원 2005. 8. 19. 선고 판결,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 제8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는 본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개정안 중 안 제8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내용

- 안 제8조 제3항은 위원의 수
  - 안 제8조 제4항은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출방법
  - 안 제8조 제5항은 위원의 임기
  - 안 제8조 제6항은 회의의 개최
  - 안 제8조 제7항은 회의개최 통지
  - 안 제8조 제8항은 의결방식
  - 안 제8조 제9항은 간사
  - 안 제8조 제10항은 위원회 수당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제4항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안교육 기관의 장, 재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본 자문위원회가 대안교육기관 중 서울시 지원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 학부모, 지원센터의 장, 대안교육기관의 장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안 제8조 제4항 관련 평생교육국의 수정의견 〉

개 정 안	평생교육국 제출 수정의견
<p><b>제8조④</b>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u></li> <li>2. <u>지원센터의 장</u></li> <li>3. <u>대안교육기관의 장</u></li> <li>4.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li> <li>5. 서울시 평생교육국장</li> <li>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b>제8조④</b>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li> <li>2.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li> <li>3.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li> <li>4.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 다만, 자문위원회의 기능(지원대상 기관 선정 등)을 고려할 때, 내실있는 의견반영을 위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의 부서장을 참여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의 취지는 실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학부모가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평생교육국의 의견에 따라 재학생, 학부모와 대안교육기관의 장 등을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본 개정안의 취지의 반영과 지원대상 선정 등에 있어 당사자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기피·제척·회피를 별도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자문은 구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위원 스스로 기피·회피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제척)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의 대상은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는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으로, 교육청이 지원하는 인가·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는 프로그램, 규모,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국의 의견대로 본 자문위원회의 당연직에 교육청 인사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관내 대안교육기관 현황 〉

총계	교육청 지원		교육청 미지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① 인가 대안학교	②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비인가)	③ 서울시 지원	④ 서울시 미지원
113개소	4개소	38개소	71개소	
			45개소	26개소

- 평생교육국 수정의견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안 제8조제9항에서 간사를 두도록 한 조문의 삭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시 대안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안 제10조제4항은 ‘분기별’로 정산하던 보조금 정산의 주기를 ‘반기별’로 정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④ 대안교육기관은 <u>분기별로</u> 시 및 지원센터에 통일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안교육기관은 <u>반기별로</u>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대안교육기관은 학기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예정된 교육프로그램이 연기되는 경우, 이를 분기별 정산에 반영하고, 다음 분기계획을 재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는 바,
  - 대안교육기관의 여건에 맞춰 학기별로 정산하는 방식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 **7. 수정안의요지**

###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대안교육 기관의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호).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 중 지원센터의 장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을 포함함(안 제8조제4항)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9항부터 제11항).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35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1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대안교육 기관의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호).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 중 지원센터의 장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을 포함함(안 제8조제4항)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9항부터 제11항).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호 중 “급식비 등”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으로 한다.

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대안교육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안 제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안 제8조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제8조제10항과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⑪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생략)</p> <p>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p>	<p>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행과 같음)</p> <p>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u>급식비</u> 등 필요한 비용</p>	<p>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개정안과 같음)</p> <p>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u>급식비, 입학준비금</u> 등 필요한 비용</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u>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u>」 제5조 "<u>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u>"와 <u>통합운영</u>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u>그 밖에 위원회</u></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u>둔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는 위원장</u></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지원센터의 장

3. 대안교육기관의 장

< 신 설 >

< 신 설 >

4.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 서울시 평생교육 국장

6. 대안교육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④ (개정안과 같음)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 삭 제 >

2. 대안교육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책과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삭 제 >

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

< 신 설 >

위촉하는 사람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시 대안교육 담  
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신 설 >

이 위촉하는 사람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  
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  
나 공동권리자 또  
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신 설 >

2. 위원이 해당 사안  
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 경우

< 신 설 >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  
언, 감정, 법률자  
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  
나 관여한 경우

< 신 설 >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  
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p>&lt; 신 설 &gt;</p>	<p>5. <u>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p>
	<p>&lt; 신 설 &gt;</p>	<p>⑩ <u>위원회 심의의 이 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lt; 신 설 &gt;</p>	<p>⑪ <u>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급식비 등”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를 “둔다.” 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대안교육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⑩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⑪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중 “분기별로 시 및 지원센터에 통일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를 “반기별로”로 한다.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제 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u>급식비</u> 등 필요한 비용</p> <p>2.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제 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u>급식비, 입학준비금</u> 등 필요한 비용</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u>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u>둔다.</u></p> <p>② (현행과 같음)</p>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2. 대안교육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신 설 >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신 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신 설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신 설 >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신 설 >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 신 설 >

5.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신 설 >

⑩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신 설 >

⑪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⑫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투명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대안교육기관은 분기별로 시 및 지원센터에 통일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회계투명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안교육기관은 반기별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